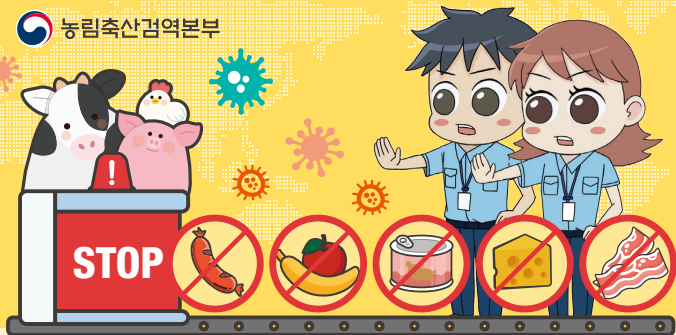




동·식물 검역 안내

- ✓ 해외로부터 동물·식물, 농산물·축산물은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.
- ✓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
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※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,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: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

1회(500만원) → 2회(750만원) → 3회(1,000만원)

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이외 제품 및 기타국가

1회(100만원) → 2회(300만원) → 3회(500만원)

검역물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
최대 3년이하 징역, 최대 3,000만원이하 벌금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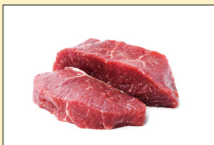


동물검역



반입 제한 품목

- 반려동물 - 개, 고양이, 애완조류 등
- 유가공품 - 우유, 치즈, 버터 등
- 육류 및 육가공품 -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소시지, 햄, 육포 등
- 동물의 생산품 - 녹용, 뼈, 깃털 등
- 알 및 알가공품 - 달걀, 조류알, 난백, 난분 등
- 반려동물 사료, 간식류 및 영양제 등



식물검역



반입 제한 품목

- 망고, 라임, 오렌지, 파파야, 사과, 고추, 풋콩 등
- 생과채류, 감자, 고구마, 마, 껍데기가 붙은 호두 등
- 사과나무, 배나무, 포도나무 등 과수의 묘목·접수·삽수 등
- 흙, 흙이 부착된 식물, 살아있는 병해충, 잡초 종자 등



검역신고 및 문의

동·축산물

054-912-1000 (내선 1)

식물

054-912-1000 (내선 2)



농림축산검역본부